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94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홍배 · 민병덕 · 김한규
이정현 · 서왕진 · 강준현
홍기원 · 안도걸 · 박희승
모경종 · 김상욱 · 한병도
윤준병 · 김태년 · 박지원
정진욱 · 서영교 · 박정현
진성준 · 최혁진 · 문진석
한민수 · 안호영 · 김남근
맹성규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활용, 관측자료의 전

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활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활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